

# 해외보증제도 비교

남 기 정 | 산업분석부 차장 |

1. 신용보증제도의 유형
2. 주요국 신용보증제도의 비교
3. 운용주체와 자원조성
4. 운용규모
5. 운용배수
6. 보증료
7. 보증비율
8. 대위변제

## 1. 신용보증제도의 유형

- 신용보증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복합적이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으나 오늘날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보증기관들이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보증제도를 운영주체 및 운영메커니즘 기준으로 분류하면

- ① 회원들의 출연이나 출자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상호보증제도
- ② 정부의 출연내지 출자를 재원으로 하여 독립된 보증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보증제도
- ③ 독립된 보증기관 없이 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는 용자보증제도

- 상호보증제도(Mutual Guarantee Scheme)
  - 상호보증제도는 근대적 신용보증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로서 회원들로 이루어진 중소기업단체가 회원의 금융기관대출에 보증하는 제도
- 공공보증제도(Public Guarantee Scheme)
  - 주로 아시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공공보증제도는 별도로 독립된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공급하는 형태로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신용보증제도로 인식
- 용자보증제도(Loan Guarantee Scheme)
  - 용자보증제도는 자격요건, 보증한도 등 일정한 보증조건을 미리 정해두고 보증실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

[표 1] 유형별 신용보증제도 비교현황

구 분	상호보증제도	공공보증제도	용자보증제도
운동주체	기업단체	독립된 보증기관	은행
보증형태	기관보증 및 정부 재보증	기관보증	정부보증
보증대상	회원기업	불특정 기업	불특정 기업
공 신 력	소	대	중
보증금액	소	대	중
신용조사 보증심사	형식적	필수적	없음
보증활용	중	대	소
운동국가	유럽지역	아시아 지역	미주 지역

자료 : 신용보증기금, 『세계의 신용보증제도』, 2006, p21

□ (공통점) 신용보증제도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다양한 정의 속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음

-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접근성을 높임
- 담보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는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중개
- 독립된 공적 보증기관 또는 공적 자금을 의해 운용되는 공적 시스템으로 각국은 자국의 특성에 맞는 보증제도를 운영<sup>1)</sup>

※ 선진국은 신용파생상품,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인프라를 통해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보완한 반면, 중소기업 금융인프라가 취약한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신용보증제도 등 주로 정책금융을 통해 보완

1) 각국의 신용보증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 문화 및 사회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신용보증 운영 방식이 국가마다 다른 것은 각 나라의 문화, 상거래관습, 정치체계 등의 차이에서 기인

## 2. 주요국 신용보증제도의 비교

[표 2] 주요국 신용보증제도 비교표

구 분	가. 일본		나. 대만
기관명	중소기업금융공고 (JASME)	신용보증협회 (CGC)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SMEG)
법인격 (관장)	특별공익법인 (재무성, 경제산업성 감독)	좌동	재단법인 (경제부)
설립년도	1953년	1937년(동경협회)~1972년	1974년
보증한도	3억엔(약 30억원)	좌동	1억NT\$(약 30억원)
보증책임 범위	70~80%	80%	1억NT\$(약 30억원)
보증료	보험료 0.40~0.87%	0.5~2.2%	0.75~1.5%
재원조성	중앙정부전액출자	- 출연 : 지방공공단체 금융기관 업자단체	- 출연 : 정부(78%), 금융기관(14%) 기타단체(8%)
특기사항	- 신용보증협회의 보증채무인수(재보험) - 신용보증협회에 저리용자 - 직접대출, 증권화지원프로그램	- 중소기업금융공고에 재보험 가입하여 70~80% 손실보전 - 보증잔액 : 29.3조엔(2006년)	- 위탁보증 위주 - 보증잔액 : 4,012억NT\$( 2006년)

구 분	다. 프랑스	라. 독일	마. 미국
기관명	중소기업보증회사 (SOFARIS)	신용보증은행 (Burgschaftsbanken)	중소기업청 (SBA)
법인격 (관장)	주식회사 (OSEO그룹)	유한회사	정부조직 (1개의 정부부서)
설립년도	1982년	1953년	1953년
보증한도	75만유로	80만유로	200백만달러
보증책임 범위	40~70%	50~80%	40~90%
보증료	0.6%	0.7~1%	2~3.5%
재원조성	- 출자 : BDPME 59.5% 금융기관 32.8% 소액주주 7.7%	- 출연 : 상공회의소 동업자조합 금융기관 등	정부예산(국채발행 등)
특기사항	- 보증잔액 : 5,535백만유로 (2004년) - 2005년 OSEO그룹에 소속	- 보증잔액 : 5,038백만유로 (2004년) - 정부출자 없음	- 보증잔액 : 16,520백만달러(2004년) - 보증승인 조건 : 대출기관이 매출 채권 및 여유시설을 담보 취득

### 3. 운용주체와 재원조성

- 각국의 신용보증제도는 보증기관의 성격은 유사하나 보증기관의 조직형태, 설치 근거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
  - (운영주체) ① 독립된 보증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 ② 정부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 ③ 중앙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 ④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등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 등
  - (재원조성) ①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이나 출자, ② 연화차관(soft loan)<sup>2)</sup>을 통한 보조금 지원, ③ 정부의 예산배정을 통한 보증재원 마련, ④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보증이나 재보험 등

[표 3] 비교대상국의 기본모델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설립연도	1976	1953	1974	1953	1954
조직형태	특별법인(보증기금)	특수법인	특별법인	정부조직	유한회사(보증은행)
운영주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협회 중소기업금융공고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청	조합, 보증은행
보증책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재원조성	중앙정부 지방정부 은행	지방정부 금융기관 기업, 단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금융기관	정부예산 (국채발행)	기업단체 은행출자
정부의 재정지원 형태	출연	재보험	출연 (70%이상)	직접보증	재보증(60%) 처리용자
기본모델	공공기관 신용보증	공공기관 신용보증	공공기관 신용보증	용자보증	상호보증

2) 달러 등 국제통화로 빌려주고 현지통화로 상환받는 차관

[참고] 금융기관의 출연제도의 성격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시 부실위험에 대한 보험료적 성격

-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은행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원
- 코딩의 경우 은행이 대위변제로 받아가는 금액이 출연금의 약 3.3배

금융기관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액 현황 (설립 시부터 '06년 말까지)

[단위 : 억원]

금융기관출연금(A)	대위변제금 총액(B)	차 액(B-A)	배 수(B/A)
57,832	190,727	132,895	3.3배

□ 자금의 재분배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지출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

- 정보의 비대칭성, 담보 및 신용도 부족, 수익 대비 거래비용의 과다 등 중소기업 대출기피 요인을 신용보증으로 보완하여 자금을 재분배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적비용
-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

□ 금융기관이 보증부대출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한 재투자비용

- 은행은 신용보증을 통해 손실을 줄이고, BIS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적정수준의 이익(예대마진)을 얻을 수 있음
- 이러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신용보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투자비용

□ 보증제도의 직접적 수혜자인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대납하는 성격

- 은행은 출연율을 대출이자에 가산하여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가장 큰 수익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체수익률과 출연율이 함께 대출금리에 반영되어 금융기관 출연금의 기업 전가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임

#### 4. 운용규모

- 보증공급의 규모는 일차적으로 중소기업의 보증수요와 금융환경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의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팽창한 보증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06년 GDP대비 보증규모는 일본의 5.8% 보다 낮은 4.8%를 기록
  - 대만의 경우 '01년 1.5%에서 '06년 3.5%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음

[표 4] 주요 국가별 GDP 대비 보증규모 비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
한 국 (조원)	GDP대비 보증잔액	7.2%	6.7%	6.4%	6.0%	5.2%	4.8%
	보증잔액	44.6	46.1	46.5	46.7	42.4	40.6
	GDP	622.1	684.3	724.7	779.4	810.5	847.9
일 본 (조엔)	GDP대비 보증잔액	7.5%	6.8%	6.3%	6.0%	5.7%	5.8%
	보증잔액	37.0	33.2	31.1	29.7	28.8	29.3
	GDP	492.3	488.7	493.6	496.2	503.2	507.8
대 만 (십억불)	GDP대비 보증잔액	1.5%	1.6%	2.0%	2.9%	3.3%	3.5%
	보증잔액	4.4	4.6	5.9	9.2	11.4	12.3
	GDP	291.7	294.8	299.8	322.2	345.9	355.6

자료) 일본 : 중소기업금융공고, 대만 : 신용보증기금(www.smeg.org.tw)  
 한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단, 지역보증재단은 제외)

## 5. 운용배수

- 운용배수는 보증제도의 운용재원 즉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보증잔액의 배수로 정의되는 보증제도의 성과지표
- 신용보증의 추가창출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임과 동시에 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척도
- 국제노동기구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운용배수가 높을수록 보증제도의 운용실적이 우수하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보증제도의 경우 적정 운용배수를 5~10배로 판단
- 운용배수가 10배 이상인 일본(22.1), 대만(17.0), 독일(16.8), 한국<sup>3)</sup>(13.0) 등은 운용배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제도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용

[표 5] 각국 신용보증기관의 운용배수

구 분	신용보증기관	설립년도	운용배수(연도)
한 국	신용보증기금(KCGF)	1976	10.5(2004)
	기술보증기금(KOTEC)	1989	17.0(2004)
일 본	신용보증협회	1937	22.1(2004)
대 만	신용보증기금(SMEG)	1974	17.0(2004)
독 일	보증은행	1970	16.8(2004)
프랑스	중소기업보증회사(SOFARIS)	1982	4.3(2004)
독 일	중소기업국(SBS)	2004	12.0(2004)

자료 : 신용보증기금, 『세계의 신용보증제도』, 2006, p43

3) 한국과 같이 잘 설립된 신용보증제도는 차입자에 대한 담보요건을 완화하는 신용정보기능을 활용하여, 보증공급 및 정보수집의 기능결합으로 효율성을 증진[엔크그린(UNIDO 컨설턴트),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2004]

## 6. 보증료

- 보증제도의 재원은 보증기관의 자본이나 출연금과 이러한 자금의 투자수익 외에도 상당부분은 보증에 대한 대가인 보증료에 의존
  - 보증료는 보증기관에 의해 제공된 신용보증 및 기타 서비스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작동메커니즘 하에서 보증제도가 운영된다는 점을 내포
- 보증료의 성격에 대해 대체로 ① 보증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수수료로 보는 경우, ②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리스크프리미엄, 즉 금리 성격으로 보는 경우, ③ 신용보증제도 고유의 것으로 보는 경우 등으로 집약
  - (한국) 우리나라의 보증료율은 보증잔액 대비 연율 0.5~3.0%이며, 신용도 및 가산·차감 기준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용
  - (일본) 일본은 '06년 보증료율 체계를 신용리스크에 따라 9단계로 개편(0.5~2.2%)하고 보증금액, 보증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미국) 미국은 보증취급시에 등록수수료(registered fee) 명목으로 보증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에 한해 징구하고 있으며 보증료는 보증금액이 클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

[표 6] 비교대상국의 보증료 비교

구 분	보증료(연율)	차 등 화
한 국	0.5~3.0%	신용도 및 가산, 차감기준에 따라 차등
일 본	0.5~2.2%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의 성격에 따라 차등
대 만	0.75~1.5%	보증종류에 따라 상이
미 국	2.0%~3.5%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에 따라 상이)	금액별 차등
독 일	0.7 ~ 1.0%	무

## 7. 보증비율

-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분보증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대출의 성격, 자금용도, 보증기간, 보증금액, 담보제공 여부, 보증업무의 위탁 여부 등에 따라 부분보증비율을 차등화
  - 전 세계적으로 70~90%의 부분보증이 공공보증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상호보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는 부분보증비율이 대체로 50~80%의 범위
  - 부분보증비율은 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 억제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남미와 같이 금융 및 신용보증시스템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부분보증비율을 낮게 운용<sup>4)</sup>
- 보증비율은 주채무의 리스크를 반영해야 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결정되어야 함
  - 보증비율은 각국의 금융환경, 기업환경 및 정책적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보증제도의 존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

[표 7] 비교대상국의 보증비율 비교

구 분	보 증 비 율
한 국 <sup>5)</sup>	70~85%
일 본	100% (부분보증제도 도입 검토중)
대 만	수권보증 : 70~90%, 전안보증 : 50~70%
미 국	75~85%
프랑스	40~70%
독 일	보증은행별 5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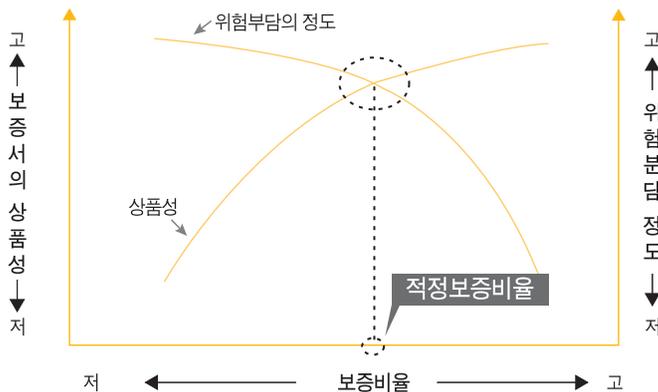
4) 칠레(70~80%), 베네수엘라(50~80%), 페루(20~100%), 아르헨티나(45~70%), 콜롬비아(20~70%)

5) 고정 금융기관출연금을 받고 있는 한국의 경우 부분보증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KDI)

[참고] 적정 부분보증비율

- 부분보증비율은 보증위험을 금융기관에 적절하게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보증서의 상품성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Levitsky(1997)는 자유화된 시장의 보증비율의 범위는 60~80%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Anke Green(2003)은 경험상의 적정 보증비율로 60~70%를 제시
  -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제도의 적정 위험분담 수준에 관한 연구보고서<sup>6)</sup>에서 부분보증비율과 금융기관 출연율을 동시에 감안할 때 부분보증비율이 70% 이하로 축소되면 금융기관의 보증제도 참여 유인이 대폭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각 국가의 다양한 경제환경으로 인해 어느 정도가 적정 보증비율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문제임
- 한국처럼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부분보증비율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음(KDI)

적정 보증비율의 개념



6) 한상일 외, "신용보증제도의 적정 위험분담 구축방안", 시장경제연구원, 2005

## 8. 대위변제

- 한국·일본·대만의 대위변제율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대만은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증가 후 안정추세임
  - 한국의 대위변제율 증가는 기보의 벤처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자 정책적으로 지원한 P-CBO보증의 부도율 심화가 주요인임
    - ※ 기보 → '03 : 6.6%, '04 : 7.4%, '05 : 9.2%
  - 일본의 경우 '01~'02년 대위변제율 증가는 특별신용보증 부실이 주요 원인임
  - 대만<sup>7)</sup> 대위변제율이 감소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보증규모를 확대한 것이 주요인임
    - ※ 보증잔액 → ('03) 1,983억 대만달러, ('04) 2,927억 대만달러, ('05) 3,728억 대만달러, ('06) 4,012억 대만달러

[표 8] 주요국의 대위변제율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 국	3.1%	3.6%	3.0%	5.4%	5.7%	6.2%	3.5%
일 본	2.6%	3.3%	3.8%	3.3%	2.8%	2.4%	2.3%
대 만	3.5%	3.6%	3.4%	2.7%	1.7%	1.2%	1.3%

주) 대위변제율 = 대위변제액 / 보증잔액

※ 한국의 경우 단일구조와 2원구조의 혼합, 일본의 2원구조, 대만의 위탁보증 등 보증제도와 대위변제 절차의 상이로 인하여 대위변제절차와 보증잔액 증감여부등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비교하기는 어려움

7) 대만의 경우 신용보증업무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보증부실 이후부터 법적 절차에 착수하여 담보권 실행 등 모든 채권회수 절차를 종료한 이후에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대위변제 청구에 대한 심사도 매우 엄격함